

의안번호	2211692
의 퇴 인	유상범의원
회 답 일	2025.8.18.
추 계 번 호	25D3957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30년 이상 재직하였던 군무원으로서 사망한 사람을 국립호국원에 안장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2억 4,800만원, 2035년 7억 2,300만원 등 향후 10년간 총 45억 7,200만원(연평균 4억 5,72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5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합계
기존퇴직자	248	279	316	356	401	451	501	554	608	676	4,390
퇴직예정자	—	3	3	7	14	18	22	31	37	47	182
합계	248	282	319	363	415	469	523	585	645	723	4,572

주: 본 추계는 국방부와 공무원연금공단의 정년퇴직 예정 인원과 퇴직연금 수급 인원, 통계청의 “장래 성 및 연령별 사망률”, 국립연천현충원 기준 묘지조성비 단가 등을 적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그 내용이 변경되면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조제1항제4호마목 (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군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군무원으로 정년퇴직한 사람에 한정함). 재직기간의 계산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를 준용함	의무규정

III.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5조제1항제4호마목 (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0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30년 이상 재직 후 정년퇴직한 군무원의 사망인원에 국립호국원 안장 단가와 묘지조성비 단가를 각각 곱하여 추정하되, 기존퇴직자와 퇴직예정자를 구분하여 추계함

□ 본 추계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산출 시, 군무원의 사망인원은 통계청 갱신(2023.12.14.) “장래 성 및 연령별 사망률”을 적용하여 추정함

○ 대상인원

－ 기존퇴직자: 공무원연금 수급자 인원(30년 이상 재직)을 기준으로 평균연령에 해당하는 사망률을 적용하여 연도별 사망인원 추정

[표 2] 군무원의 퇴직연금 수급(30년 이상 재직) 인원: 2024.12.31. 기준
(단위: 명)

구분	군무원		
	남성	여성	합계
40대	—	—	—
50대	473	235	708
60대	5,939	663	6,602
70대	4,190	72	4,262
80세이상	126	2	128
합계	10,728	972	11,700

주: 30년 이상 재직 후 퇴직 군무원 중 퇴직연금 대신 퇴직연금일시금을 수령한 인원도 존재하나, 그 비율이 미미¹⁾하므로 본 추계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함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표 3] 퇴직연금 수급자(군무원)의 사망 인원 추정: 2026~2035년
(단위: 명)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남성	187	201	217	234	251	270	286	302	317	335
여성	4	4	5	5	6	6	7	8	8	10
합계	191	205	222	239	257	276	293	310	325	345

주: 1) 사망 인원의 경우 50대는 60세, 60대는 65세, 70대는 75세, 80세 이상은 85세 기준 남성과 여성의 사망률을 구분·적용하여 산출함

2) 위 표의 사망 인원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자료와 통계청 “장래 성 및 연령별 사망률”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1) 30년 이상 군무원 연금 대비 일시금 청구 현황: 2020~2024년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 계
	연금(A)	연금(B)	연금(C)	연금(D)	연금(E)	연금(F)
군무원	571	457	677	617	581	2,903
	4	2	5	3	5	19
	0.7%	0.4%	0.7%	0.5%	0.8%	0.6%

주: 지급결정 기준(유족급여청구자, 퇴직수당 청구자는 제외)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 퇴직예정자: 연도별 정년퇴직 추정 인원(해당연령의 1세별 사망률을 적용하여 연도별 사망인원을 추정)

[표 4] 30년 이상 재직 군무원의 정년퇴직 예정 인원 추정: 2025~2035년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남성	152	187	222	312	380	444	531	558	560	431	263
여성	35	33	43	56	50	83	107	105	127	109	82
합계	187	220	265	368	430	527	638	663	687	540	345

자료: 국방부

[표 5] 정년퇴직 예정자의 사망 인원 추정: 2026~2035년

(단위: 명)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남성	1	2	3	5	8	10	13	17	20	23
여성	-	-	-	-	-	1	1	1	1	2
합계	1	2	3	5	8	11	14	18	21	25

주: 1) 사망 인원은 정년퇴직의 다음연도부터 1세별 사망률을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적용하여 산출함

2) 위 표의 사망 인원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방부 자료와 통계청 “장래 성 및 연령별 사망률”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본 추계에서 개정안에 따른 군무원의 안장률은 최근 5년(2020~2024년) 국립호국원 평균 안장률²⁾을 적용하며, 추계기간 동안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함
- 본 추계에서 개정안에 따른 군무원의 국립호국원 안장비용과 묘지조성비 단가는 다음과 같이 추정함
 - 안장비용: 2025년 안장비용 단가(140천원)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 상승률³⁾을 적용하여 추정

[표 7] 1인당 안장비용: 2025년 기준

(단위: 천원)

구분	유골함	봉안명패	합계
단가	90	50	140

주: 유골함은 봉안당 기준이며, 봉안명패는 부부 동시합장 기준임

자료: 국가보훈부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2) 국립호국원 안장률 현황: 2020~2024년

(단위: 명)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호국원						
안장대상자	11,915	11,383	12,551	10,280	9,213	55,342
실제안장자	5,766	5,260	5,794	4,650	3,885	25,355
안장률	48.4%	46.2%	46.2%	45.2%	42.2%	45.8%

자료: 국가보훈부

3) 소비자물가상승률(2025. 3. 경제전망 기준)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소비자물가상승률	1.9%	2.0%	2.0%	2.0%	2.0%	2.0%	2.0%

- 묘지조성비: 2025년 기준 국립연천현충원의 묘지조성비 단가(2,572천원)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발표 최근 10년 건설공사비지수 연평균 상승률⁴⁾을 적용하여 추정

[표 8] 국립연천현충원 조성사업 개요: 2025년 기준

· 사업위치: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 산 120번지 일원
· 부지면적: 957,570m ² (29만평)
· 조성규모: 5만기 봉안시설(봉안당 2만5천기, 봉안담 2만기, 자연장 5천기)
· 사업기간: 2019~2027년
· 총사업비: 128,607백만원(보상비 16,764백만원, 설계비 6,527백만원, 공사비 100,079백만원, 감리비 5,006백만원, 부대비 231백만원)

자료: 국가보훈부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개정안은 부칙에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심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으로 함

4) 건설공사비지수(2025.3.31. 발표)

구분	2016.1.	2018.1.	2020.1.	2022.1.	2024.1.	2025.1.	연평균
건설공사비지수	85.65	93.59	99.69	120.11	129.52	130.47	4.79%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기존퇴직자(퇴직연금 수급자)

- 기존퇴직자 국립호국원 안장의 추가재정소요는 퇴직연금 수급자의 연도별 사망인원[표 3]에 안장률 평균(45.8%)을 적용한 후 국립호국원 안장비용 단가와 묘지조성비 단가를 각각 곱하여 추계함
- 추계결과, 개정안에 따라 기존퇴직자를 국립호국원에 안장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다음 표와 같이 추계됨

[표 9] 기존퇴직자(퇴직연금 수급자) 국립호국원 안장의 추가재정소요: 2026~2035년
(단위: 명,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합계
사망 인원	남성	187	201	217	234	251	270	286	302	317	335	2,600
	여성	4	4	5	5	6	6	7	8	8	10	63
	소계	191	205	222	239	257	276	293	310	325	345	2,663
안장률		45.8%	45.8%	45.8%	45.8%	45.8%	45.8%	45.8%	45.8%	45.8%	45.8%	－
안장인원		88	94	102	109	118	126	134	142	149	158	1,220
안장비용(천원)		143	146	149	152	155	158	161	164	167	171	－
묘지조성비(천원)		2,695	2,824	2,960	3,101	3,250	3,405	3,568	3,739	3,918	4,106	－
합계		248	279	316	356	401	451	501	554	608	676	4,390

주: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퇴직예정자

- 퇴직예정자 국립호국원 안장의 추가재정소요는 정년퇴직 예정자의 연도별 사망인원[표 5]에 안장률 평균(45.8%)을 적용한 후 국립호국원 안장비용 단가와 묘지조성비 단가를 각각 곱하여 추계함
- 추계결과, 개정안에 따라 퇴직예정자를 국립호국원에 안장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다음 표와 같이 추계됨

[표 10] 퇴직예정자 국립호국원 안장의 추가재정소요: 2026~2035년

(단위: 명,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합계
사망 인원	남성	1	2	3	5	8	10	13	17	20	23	102
	여성	－	－	－	－	－	1	1	1	1	2	6
	소계	1	2	3	5	8	11	14	18	21	25	108
안장률		45.8%	45.8%	45.8%	45.8%	45.8%	45.8%	45.8%	45.8%	45.8%	45.8%	－
안장인원		－	1	1	2	4	5	6	8	9	11	47
안장비용(천원)		143	146	149	152	155	158	161	164	167	171	－
묘지조성비(천원)		2,695	2,824	2,960	3,101	3,250	3,405	3,568	3,739	3,918	4,106	－
합계		－	3	3	7	14	18	22	31	37	47	182

주: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다.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30년 이상 재직하였던 군무원으로서 사망한 사람을 국립 호국원에 안장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2억 4,800만원, 2035년 7억 2,300만원 등 향후 10년간 총 45억 7,200만원(연평균 4억 5,720만원)으로 추계됨

[표 1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5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합계
기존퇴직자	248	279	316	356	401	451	501	554	608	676	4,390
퇴직예정자	-	3	3	7	14	18	22	31	37	47	182
합계	248	282	319	363	415	469	523	585	645	723	4,572

주: 본 추계는 국방부와 공무원연금공단의 정년퇴직 예정 인원과 퇴직연금 수급 인원, 통계청의 “장래 성 및 연령별 사망률”, 국립연천현충원 기준 묘지조성비 단가 등을 적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그 내용이 변경되면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국방부와 공무원연금공단의 정년퇴직 예정 인원과 퇴직연금 수급 인원, 통계청의 “장래 성 및 연령별 사망률”, 국립연천현충원 기준 묘지조성비 단가 등을 적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그 내용이 변경되면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장삼열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삼열	02-6788-4831	jsy@na.go.kr